
정책참고자료

2018-22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행정안전부

음주운전 용서 받지 못하는 범죄행위입니다

- 행정안전부, 2018년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실시 -

4

2 국민권익위원회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환경이 개선된다

-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 등에
도로·여객시설 등의 이동편의 시설 제도개선 권고 -

9

3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중소기업 혁신제품,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판로를 열다!

- '18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실적 및 전망 발표 -

12

4 교육부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 후속조치 마련

-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

20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망 안정성·관리책임 강화로 국민 불편 최소화

- '19년 상반기까지 500m 미만 지하 통신구에 소화설비 설치 완료 -

25

6 문화체육관광부

키즈카페(어린이 놀이방) 안전관리는 이렇게 하세요 !

- 관계부처 합동, <알기 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 배포 -

31

7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청년창업농 1,600명 신규 선발

- 청년 현장애로 해소, 정착지원금 부정 사용방지 등 제도개선 -

35

8 환경부

사업장 배출 질소산화물 획기적으로 줄인다

- 미세먼지 및 오존 생성 원인인 질소산화물에 대기 배출부과금 부과 -

43

9 고용노동부

**지역이 자율적으로 설계 할 수 있는
지역 일자리 사업 개편**

_____ 47

- 2019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공모 완료 -

10 여성가족부

청소년 생리대, 선호제품으로 지원 받으세요!

_____ 49

- 현물에서 카드(국민행복카드) 지원으로 변경 -

11 국토교통부

내년 1월부터 단독·다가구 하자보수보증.하자 걱정 없이 안심

_____ 54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준공 전 시공단계 현장검사(3회)..사전 품질관리 강화 -

12 해양수산부

해양사고 예방 첫걸음, 준해양사고 뉴스레터 첫 발간

_____ 57

- 준해양사고 사례 공유를 통해 대형 해양사고 예방 기대 -

1

행정안전부

음주운전! 용서 받지 못하는 범죄행위입니다

- 행정안전부, 2018년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실시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연말연시에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과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2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광장'에서 음주운전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 이번 행사에서는 시민들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고 사진 전시, 예방홍보 영상물을 상영하였다.
- 또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차량 시승, 음주진단 등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 연말연시에는 각종 송년·신년 모임으로 인해 술자리가 잦아 음주운전의 유혹에 노출되기 쉬운 시기로서, 국민들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다.
- 음주운전예방 캠페인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시, 손해보험협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하며, 연말연시 기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행사 등과 연계하여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를 유발할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18.12.18.)되었다.

- 내년에는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지는 등 음주운전 단속이 엄격해짐에 따라,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적극 홍보키로 하였다.

※ 처벌기준 강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비 고
음주 사망	1년 이상 징역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 징역	'18.12.18 시행
음주 치상	10년 이하 징역 500~3,000만원 벌금	1~15년 이하 징역 1,000~3,000만원 벌금	
음주운전 처벌	3회 이상 적발시	2회 이상 적발시	시행예정 ('19년 6월경)
운전면허 정지기준	혈중알코올 농도 0.05~0.10%	혈중알코올 농도 0.03~0.08%	
운전면허 취소기준	혈중알코올 농도 0.10%~	0.08% 이상	

※ 세부내용 붙임참조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두 잔은 괜찮다는 생각의 음주운전이 사고를 당하는 상대방과 그 가족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절대 용서 받지 못하는 범죄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국민 모두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행사 개요

< 행정안전부 >

- (추진목적) 연말연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주변에서 교통안전문화 확산과 음주운전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음주운전예방 캠페인 추진
- (일시/장소) '18. 12. 26(수) 17:00~18:00 / 서울 보신각 앞 광장 주변
-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경찰청, 종로구, 손해보험협회, 안전실천 시민연합,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100여명
- (주요내용)

- ① 시민참여 행사 : 음주 체험차량 시승, 음주진단 체험, 음주고글 체험행사 이벤트 등
- ② 사진 전시 및 영상물 상영 : 음주운전사고 사진 전시, 음주운전예방 홍보 영상물 상영 등
- ③ 홍보물 배부 : 거리 캠페인, 물티슈 배포, 인근 업소 주변 보행자 홍보 등

< 지방자치단체 >

- (추진목적) 안전점검, 교통문화 확산행사 등 자체행사와 연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음주운전예방 캠페인 추진
- (일시/장소) '18. 12. 17. ~ 12. 28. (2주간) / 지역별 실정에 맞게 선정
- (추진방식) 지자체에서 경찰서,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실시
- (주요내용)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 계획 수립 추진

- ① 지자체 안전점검, 연말연시 안전대책 등과 연계하여 캠페인 추진
- ②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교육·홍보시 음주운전예방 홍보, 시너지 효과

□ **주요 행사내용(행정안전부)**

< **시민참여 프로그램** >

- 음주운전 체험차량 시승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

*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기념품(햇팩) 제공



< **음주운전사고 사진 전시 및 영상물 상영** >

- 음주운전사고 사진(10여점)
- 음주운전사고예방 홍보영상물 등 상영(LED 전광판 차량)

< **거리 캠페인 및 홍보물 배포** >

- 음주운전 위험성을 알리는 거리 캠페인(어깨띠, 피켓 활용)
- 음주운전예방 홍보문구가 적힌 홍보물 배부



붙임 2

음주운전 처벌 강화 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근거법률
음주 사망		1년 이상 징역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 징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8.12.18 시행)
음주 치상		10년 이하 징역 500~3,000만원 벌금	1~15년 이하 징역 1,000~3,000만원 벌금	
음주운전 처벌		- 3회 이상 적발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500~1,000만원 벌금	- 2회 이상 적발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1,000~2,000만원 벌금	도로교통법 (‘19년 6월경 시행예정)
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	운전면허 정지 기준	혈중알코올 농도 0.05~0.10%	혈중알코올 농도 0.03~0.08%	
	운전면허 취소기준	혈중알코올 농도 0.10%~	0.08% 이상	

※ 청색 테두리 내용은 既시행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환경이 개선된다

-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 등에
도로·여객시설 등의 이동편의 시설 제도개선 권고 -

- 앞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길거리를 걷거나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때 겪었던 불편이 다소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도로와 여객시설에 설치된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등 3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특별시 등 8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철도시설공사 등 11개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등에 3년간 접수된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 이용편의 관련 민원 1,672건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법적근거 부재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과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세부기준이 상이 ▲ 지자체의 조례제정 소홀 ▲ 장애인 등의 복지시설이 도심외곽에 설치*되어 이동 불편 등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 복지시설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로 도심외곽이나 고지대에 주로 설치됨

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범적으로 8개 광역자치단체의 도로와 여객시설 257개 지점에 대해 장애인단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였고, 간담회 등을 거쳐 이용자 중심의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개선내용은 ▲ 제도·운영 9개 개선항목 ▲ 보행환경(보도) 4개 개선항목 ▲ 여객시설 3개 개선항목 등 총 16개 항목으로, 구체적인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도·운영(9)

-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법률 개선 (2)
 - 연안항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
 - 공급자(행정기관) 중심의 기준적합성 심사제도를 이용자 참여가 가능한 심사 제도로 변경
- ②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개선 (3)
 - 법령별 세부기준 상이, 설치 범위의 불명확, 시각장애인의 위험요소 개선
- ③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장애인 안전시설편(국토교통부 예규) 개선
 - 법령과 불일치한 관리지침의 현행화
- ④ 광역자치단체별, 조례 개선(2)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등)
 - 교통사업자에 대한 교육방법 등 제정, 광역별 기술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
- ⑤ 광역자치단체별, 여러 부서로 분장된 업무의 통합관리 방안 마련
 -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주관부서 선정 및 통합관리방안 마련

도로(보도)(4)

- ① 현실적인 실태조사 범위 마련
 - 교통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장소 등 실질적인 실태조사 범위 포함
- ② 복지시설 주변 접근로의 가이드라인 마련
 - 복지시설 건축 시 주변 접근로에 급경사 등 지형적 특성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방안 마련
- ③ 법령별, 이원화된 이동편의시설의 연계 강화방안 마련
 - 「교통약자법」 과 「장애인등편의법」 에 따라 설치주체가 다른 경우, 이동편의시설의 연계 강화방안 마련
- ④ 설치가 미흡한 이동편의시설의 개선안 마련
 - 잘못 설치되거나, 미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계획 수립 등
 - ※ 현황점검 시, 장애인 등 이용자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방안 마련

여객시설(3)

① 여객시설의 상시점검 계획 수립

- 환승복합시설 등 설치·관리가 미흡한 여객시설의 상시점검 계획 수립
- ※ 장애인 등 이용자가 참여하는 합동점검 및 기관간 협력방안 마련

② 행정제재의 내부절차 마련

-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 행정제재에 대한 내부절차 마련
- ※ 재정이 열악하거나, 개선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 유예 또는 예외기준 모색

③ 버스정류장의 이동편의시설 점검·개선계획 수립

- 중점개선항목 선정 및 연차별 개선 추진방안 마련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이번에 마련한 교통약자 이동 편의 개선방안은 국가가 사회적 약자에게 책임을 다해야 하고, 그 책임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생활 전반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업·중소기업 혁신제품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판로를 열다

- '18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실적 및 전망 발표 -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경우 기술력이 높다하더라도 인지도가 낮은 경우 신규 판로를 개척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 그러나, 이러한 통념을 깨고 신설된 정부 제도를 통해 수월하게 중소기업 기술개발 신제품을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하여 성장 발판을 마련한 중소기업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인 ‘혁신성장’과 국정과제인 ‘창업기업 성장촉진’의 달성을 위해 도입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가 점차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 ‘19년 이후에는 공공기관 평가(공기업 평가, 지자체 평가 등) 반영 및 법적근거 마련* 등으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통한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밝혔다.
 - * 시범구매제도 근거 등에 대한 판로지원법 개정안 국회 심의 중(‘18.10, 송갑석의원 발의)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는 판로 개척 단계에 있는 기술개발 신제품의 구매의사 결정을 중기부가 대행*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감사 부담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기술개발 신제품의 원활한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제도로,
 - * 중기부가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구매기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의사결정을 대행

- ‘18.4월, 중기부가 한전, LH 등 6개 공공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처음으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가 도입된 이후 ’ 18.12월 현재 참여 공공기관이 60개로 확대되었고,
- 상·하반기 정기공고(‘18.5, ’ 18.8) 및 ‘18.10월부터 시작한 수시(소액)모집을 통해 선정된 기술개발제품의 계약 규모가 245억원(126개 제품)에 달하고 있다.
- 또한, 전체 시범구매 제품 중 창업기업 제품이 33%(42개), 첫걸음 기업 제품이 53%(67개)를 차지하고 있어 창업기업과 기술은 있으나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 18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선정 현황 〉

구 분	창업기업		일반기업		전체
		첫걸음		첫걸음	
제품수(개)	42	24	84	43	126
구매 확정액(억원)	29	11	216	81	245

- 아울러, 중기부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평가에 시범구매 실적 반영을 적극 추진(기재부·행안부 협조)하고 있으며,

* 행안부 지자체 평가에 시범구매 실적을 포함시키기로 확정(‘18.12)하였으며, 기재부 공공기관 평가에는 ’ 19년 초에 시범구매 실적을 평가항목 반영 예정

- 시범구매로 인한 공공기관의 감사 부담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감사자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감사원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 또한, 이러한 노력을 통해 향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실적이 ‘19년 2,000억원, ’ 21년에는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통해 공공조달시장 진출에 성공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주)아도니스글로벌

- (주)아도니스글로벌은 ‘층간소음’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고자 친환경 천연 목재마루를 기술개발 신제품으로 개발하여 특허와 인증을 취득하였지만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음
- 시범구매 제품으로 선정되어 '18. 12월 LH와 19억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계기로 향후 지속적으로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

< 시범구매를 통한 중소기업 판로 개척 성공 사례 >

- ◆ 회사명 : (주)아도니스글로벌 (층간소음 저감 마루)
- ◆ 제품특징 : 바닥마감재를 통해 울림을 분산, 흡수하여 층간소음 저감 기능 탁월
- ◆ 제품현황 : '17. 12월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취득 후 납품을 위해 노력함
- ◆ 제품매출 : ('17) 270백만원 → ('18) 2,800백만원 (시범구매 1,900백만원, 68%)

② 에이지티 주식회사

- 에이지티 주식회사는 '16년 섬유화 기술을 이용한 보온단열재를 개발하여 신제품(NEP) 인증을 받고 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실제 납품 실적은 저조하였음
- 시범구매 제품으로 선정되어 창업·첫걸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중부발전에 5천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른 발전사 등에도 지속적으로 추가 납품을 준비

< 시범구매를 통한 중소기업 판로 개척 성공 사례 >

- ◆ 회사명 : 에이지티 주식회사(섬유화 기술을 이용한 무기계 보온단열재)
- ◆ 제품특징 : 열전도율이 낮고 단열효과가 뛰어나며, 배관 규격에 따른 제단·가공 용이
- ◆ 제품현황 : '16. 9월 NEP(신제품) 인증 취득 후 납품을 위해 노력함
- ◆ 제품매출 : ('17) 실적없음 → ('18) 50백만원 (시범구매 실적)

③ (주)수테크놀로지

- ' 15. 3월 설립된 (주)수테크놀로지는 기존 좌변기에 간단히 설치하여 냄새를 제거하는 에어커튼 제품을 기술개발제품으로 개발하였으며,
 -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던 중 시범구매제도에 최종 선정되면서 공공기관(한국전력공사, LH, 한국농어촌공사, 중기부 등) 납품함으로써 전년도 대비 '18년 해당 제품의 매출이 220% 성장

< 시범구매를 통한 중소기업 판로 개척 성공 사례 >

- ◆ 회사명 : (주)수테크놀로지(냄새를 저수조의 물로 용해하는 변기에어커튼)
- ◆ 제품특징 : 냄새를 저수조의 물로 용해하는 기술 제품으로 물질감 효과 약2.5톤/월 및 친환경 방법 탈취효율 97%
- ◆ 제품현황 : '18. 6월 성능인증 취득 후 납품을 위해 노력함
- ◆ 제품매출 : ('17) 90백만원 → ('18) 200백만원

□ 중기부 이병권 성장지원정책관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는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 혁신성장’ 과 ‘창업기업 성장촉진’ 을 위해 새롭게 추진한 대표적인 정책 사례” 라면서

- “올해의 경우 제도 도입 준비로 인해 구매 실적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내년도부터는 참여 공공기관 확대,

법적근거 마련 등을 통해 시범구매 실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 향후 시범구매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혁신제품이 원활하게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고 더 나아가 민간과 해외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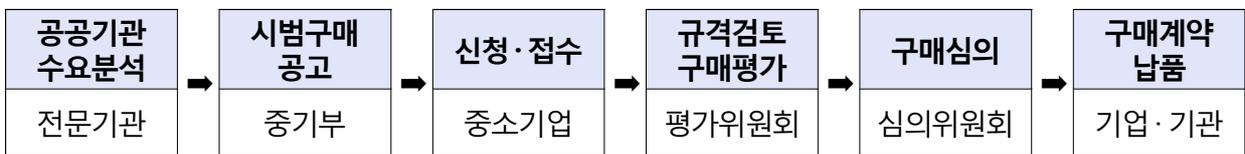
- 참고 : 1.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개요
2. ‘18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실적 및 사례

□ 시범구매제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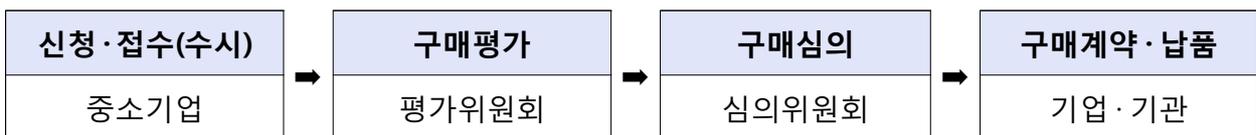
- (제도정의) 창업기업 또는 판로개척 단계에 있는 기술개발제품의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별도의 평가과정을 통해 제품을 선정된 후, 참여기관이 약정한 금액만큼 제품을 구매하는 제도
- (제도특징) 객관성을 갖춘 전문가 집단이 공공기관의 구매결정을 대행하여 감사 및 민원 부담을 해소하고, 혁신제품 판로 지원
- (지원방식) 협약 및 공공기관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시범구매를 유도하는 방식
- (신청대상) 공공기관 납품이 일정 규모 이하이고 관련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술개발제품
- (선정방법) 중기부 산하에 시범구매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구매를 요청한 기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최종 구매 대상 선정

□ 시범구매 지원내용

- (공고형 과제) 정기적인 공고를 통하여 신청제품을 모집하고, 구매 평가 및 심의를 거쳐 시범구매제품을 선정하는 창업과제와 일반과제



- (소액 과제) 상시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을 모집하고 서면평가, 심의를 거쳐 시범구매제품을 선정하는 소액과제



□ 시범구매 참여 공공기관

○ 시범구매 공공기관 : 60개 기관

(2018년 12월 기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	합 계
공기업형	준정부형	기타	계			
26	17	2	45	2	13	60

○ 시범구매 공공기관 현황

구 분		참여 기관명			
공공기관 (45)	공기업형 (26)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마사회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	한전KPS
		한전KDN	한국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방송광고 진흥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		
	준정부형 (17)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 공사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한국관광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기타공공기관 (2)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지방자치단체 (2)	대전시청	부산시청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 (1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연구원	
	공영홈쇼핑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창업진흥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한국산학연합회				

□ 시범구매제도 실적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통해 30개 공공기관이 126개 제품, 245억원 규모의 기술개발제품 구매확정

- 공공구매시장 진출이 어려운 창업 및 판로개척 단계의 기술개발 제품을 시범구매를 통해 공공기관에 납품 연결을 지원

* 창업기업 제품은 42개(33.3%), 첫걸음기업 제품은 67개(53.2%) 판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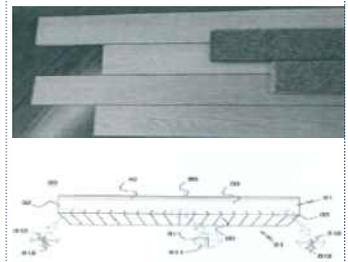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실적 현황>

구 분	창업기업	첫걸음		일반기업	첫걸음	전체
		제품수(개)	구매 확정액(억원)			
제품수(개)	42	24	84	43	126	
구매 확정액(억원)	29	11	216	81	245	

□ 시범구매제품 성공사례

우수 사례 (1)

- (주)아도니스글로벌은 층간소음저감 기능이 탁월하고 미끄럼 방지기능을 갖춘 층간소음저감 마루를 개발
- '18년 시범구매제품으로 선정되어 NH의 춘천, 인천 아파트 시공 건설 현장에 계약을 성공
- * 매출액 : ('17) 270백만원 → ('18) 2,800백만원



우수 사례 (2)

- 에이지티 주식회사는 열전도율이 낮고 단열효과가 뛰어나며 유이계 단열재 단점을 보완한 제품 개발
- '18년 시범구매제품으로 선정되어 한국중부발전에 수의계약에 성공하여 후속구매 추진
- * 매출액 : ('17) 실적없음 → ('18) 50백만원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 후속조치 마련

-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8월31일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학교폭력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월 24일(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기준을 새로 마련하였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을 부과할 때,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미이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300만원의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따라서 보호자의 가정교육 책무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법률 : 특별교육 부과 및 과태료 부과 조항 >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⑨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23조(과태료) ① 제17조제9항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본조신설 2017. 11. 28.]

< 시행령 : 신설된 과태료 부과 기준 조항 >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또한,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폭력 업무 지원의 직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학교와 경찰이 상호 협력하여 학교폭력을 해결하도록 하였다.
 - 이번 개정으로 '12년부터 학교폭력 예방활동,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등의 역할을 수행해 온 1,054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관련 조항 >

제31조의2(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 ① 경찰청장은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이하 “학교전담경찰관”이라 한다)을 둘 경우에는 학생상담 관련 학위나 자격증 소지 여부, 학생 지도 경력 등 학교폭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

② 학교전담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폭력 예방활동 2.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3.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4.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
5. 그 밖에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학교전담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

- 한편, 성폭력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이루어진다. ①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감 책임 하에 학교를 배정*하고, ②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결석할 경우,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18.12.17)에서 결정되어 합의

[성폭력 피해학생 전입학 방법 개선]

- 앞으로는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하고,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면, 지정받은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락하도록 “교육청 전입학 지침”이 개정된다.
- 만약, 전입학 불허 시에는 대상학교 학교장은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고, 교육감은 “교육청 전입학위원회”를 개최하여 불허 사유를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유가 타당한 경우 다른 학교로 배정, 그렇지 않을 경우 대상학교는 전입학을 허가하여야 한다.

< 개선된 성폭력 피해학생 전입학 절차 >

- ① (재학교) 피해학생 학교장이 전입학 대상학교 배정을 교육감에게 요청
- ② (교육청) 전입학 학교를 지정
- ③ (전입교) 전입학 요청에 대해 전입학 허가 또는 불허 결정, 불허 결정시 교육감에게 사유서 제출
- ④ (교육청) 전입학 위원회에서 전입 불허 사유에 대해 심의, 심의 결과에 따라 다른학교 지정 또는 재차 지정
- ⑤ (전입교) 재차 지정시 무조건 전입학 허가
- ⑥ (피해학생) 배정된 학교로 전입

- 시·도교육청은 ‘19년 2월까지 교육청 전입학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나, 지침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이번 합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 그동안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교장 전형학교*에 재학하는 성폭력 피해 학생의 전입학의 경우, 재학교 학교장이 전입교 학교장에게 전입학 허가 요청을 하고, 전입교 학교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였다.

* 특성화고, 자사고, 비평준화 지역 등 학교장이 직접 신입생을 선발하는 학교

※ 교육청에서 학생을 배정하는 학교는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전입학 배정학교를 요청하고 있음.

- 이때, 전입교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 등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전입학을 불허하면 전입학이 불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그 절차가 개선되었다.

< 현행 학교장 전형학교의 전입학 절차 >

- ① (재학교) 피해학생 학교장이 전입학 대상학교로 전입학 요청
- ② (전입교) 전입생 요청에 대해 전입학 허가 또는 불허 결정
- ③ (피해학생) 전입학 허가시 전입가능, 불허시 전입 불가능

[학교폭력 피해학생 출석인정 범위확대]

□ 또한, 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결석할 경우,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43호) 제8조(출결상황) 별지 제8호(출결상황 관리) 출석 인정 조항 신설('19.1.8.까지 행정예고 후 2019학년도 3월부터 적용 예정)

※ 학교폭력을 당해 두려움으로 학교를 못나왔던 피해학생이, 나중에라도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출석인정을 받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

< 신설된 출석인정 조항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 기존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를 당해 결석할 경우,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결석에 대한 출석 인정 여부에 대해 현장의 혼란이 있었으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제4항

- 이번 개정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출석인정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를 강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 근절과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정책 발굴과 개선이 필요하며, 이번의 제도개선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 그리고 피해학생을 위한 세심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통신망 안정성 · 관리책임 강화로 국민 불편 최소화

- '19년 상반기까지 500m 미만 지하 통신구에 소화설비 설치 완료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27일(목)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 논의를 거쳐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 지난 11월 24일 KT 아현지사의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서울 5개 구와 경기 고양시 일대 통신장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해당 지역 시민들은 유·무선 전화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었으며, 소상공인들은 통신장애로 인해 카드결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매출액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
- 과기정통부는 통신재난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현장실태 조사와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TF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TF'는 행안부, 소방청, 방통위, 금융위, 통신사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통신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에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 (별첨1)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 주요내용

※ (별첨2)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 전체내용

[현장실태 조사 결과분석]

◇ 현장실태 조사는 과기정통부 및 통신·소방전문가(62개팀)가 주요 통신시설, 지하통신구 등에 대해 실시하였다.

○ 주요통신시설 1,300개소*에 대한 조사결과, 현재 중요통신시설 지정 기준에 따른 등급(A~D급)의 상향 또는 하향 등 조정이 필요하다.

* 전국 주요통신시설(915개), 통신구(230개), IDC(122개), 기타(33개)

< 중요통신시설 지정기준 >

A급	재난 발생 시 피해범위가 권역* 규모인 주요 시설집중국 * 서울 및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충청권
B급	재난 발생 시 피해범위가 광역시/도 규모인 주요 시설집중국
C급	재난 발생 시 피해범위가 특별자치시 및 3개 이상의 시/군/구 규모인 주요 시설집중국
D급	재난 발생 시 피해범위가 시/군/구 규모인 주요 시설국

○ 현행법 상 소방시설 의무대상인 500m 이상 통신구에 자동화재탐지설비나 연소방지설비* 설치가 일부 되지 않았고, 설치 의무가 없는 500m 미만 통신구는 소방시설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통신구별로 감시 등도 허술하였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 열·연기감지기 등 / 연소방지설비 : 살수설비, 방화벽 등

※ (별첨3) 주요통신시설에 대한 현장실태 조사결과

[예방: 관리체계 강화]

- ◇ 실태점검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함께 제도상으로도 500m 미만 통신구에는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문제가 있었다.
 - ⇒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500m 미만 통신구도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통신사는 법령 개정 전이라도 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해 법령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하기로 하였다.
 - ⇒ 또한, 현재 선언적이거나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화재·수해·지진 등 재난예방에 대한 상세 기준(고시)도 마련할 계획이다.
- ◇ 정부는 중요 통신시설(A-C급)에 대해서만 2년 주기에 걸쳐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가 등급기준에 따라 등급을 자체 분류하고, 이에 대한 적정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통신시설 관리 체계에 공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 정부는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점검대상을 일반 재난관리 대상시설(D급)까지 확대하고, 점검 주기(A.B.C급: 2년→1년, D급: 2년 신설)도 단축한다.
 - ⇒ 또한, 정부는 통신·재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칭)'를 설립하여 등급지정 기준 및 통신사의 재난계획의 수립지침 등을 심의·확정한다.

- 동 위원회는 이번에 발표하는 재난대책의 추진실적 등을 점검하고,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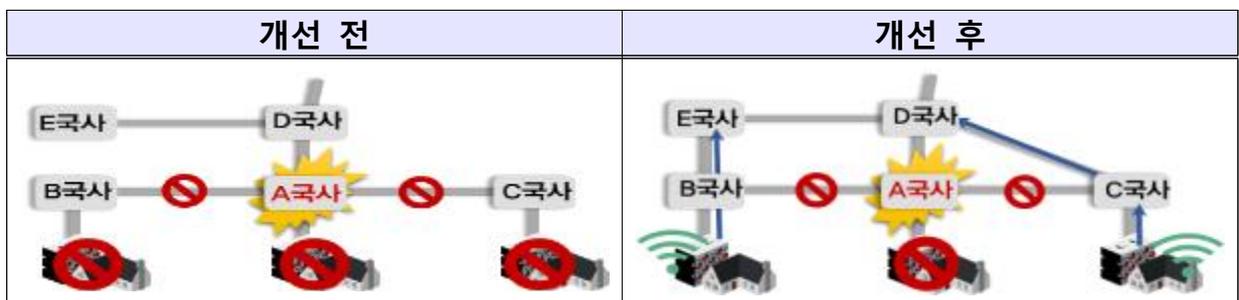
[대비: 통신망 생존성 강화]

◇ 이번 통신구 화재에서 통신국사의 통신망 우회로가 확보 되어 있지 않아, 한 통신국사의 장애가 인근 통신국사에 영향을 미쳐 통신재난 피해지역의 범위가 넓어졌다. 이로 인해 통신망이 핵심 인프라가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통신재난 발생 시에도 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 통신망 우회로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기술방식은 ‘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하여 결정할 계획이며, 통신망 우회로 확보를 위한 투자비용을 고려하여 각 통신사별 재무능력에 따라 유예기간을 달리 줄 계획이다.

< 통신국사간 통신망 우회로 확보 방안(예시: 이원화) >



[대응·복구: 이용자 보호 및 협력 체계 마련]

- ◇ 이번 통신망 복구과정에서 전화나 카드결제 등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국민들이 알지 못하였고, 관련 안내나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부족하였다. 또한, 통신사 간 협력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사전 약속이 없어, 재난 시 통신사 간 협력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 정부는 통신재난시 긴급전화 사용법, 행동지침 등 **이용자 행동요령**을 마련하여 홍보하고, 옥외전광판·대중교통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재난경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통신사가 통신장애 발생사실과 손해배상 기준, 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 ⇒ 통신사는 통신재난 시 이용자가 기존 단말을 통해 타 이동사의 무선 통신망을 이용(음성·문자)할 수 있도록 **로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재난 지역에 각 통신사가 보유한 **Wi-Fi망을 개방**하여 인터넷, 모바일 앱전화(mVoIP)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책의 첫 후속조치로 ‘**과기정통부와 통신사간 협력방안 논의 간담회**’를 27일 오후 개최하였다.
 -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와 통신사는 통신재난 대비와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극복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책에 공감하였으며, 재난 상황에서 통신사간 로밍, Wi-Fi망 개방 등 상호협력 방안을 담은 ‘**협약**’을 체결하였다.

※ (별첨4) 통신재난 관련 과기정통부·통신사 간 협약서

- 과기정통부 민원기 제2차관은 “이번 KT 통신구 화재사고로 그동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 구축으로 편리함을 누려온 반면, 통신재난에는 대비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었다”면서,
 - “이번 대책을 통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흡한 부분은 강화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통신망 구축을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키즈카페(어린이 놀이방) 안전관리는 이렇게 하세요 !

- 관계부처 합동, <알기 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 배포 -

정부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시설로 이루어진 키즈카페(어린이 놀이방)에서의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키즈카페 사업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알기 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 등 관계부처 누리집을 통해 12월 28일(금)에 배포한다.

최근 어린이와 부모들이 즐겨 찾는 키즈카페는 유기기구(꼬마기차, 붕붕뽀뽀 등), 어린이놀이기구(미끄럼틀 등), 완구 등의 놀 거리와 식음료를 같이 제공하는 복합공간으로서, 다양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이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해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어린이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문체부, 행안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환경부(장관 조명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소방청(청장 정문호) 합동으로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키즈카페 관계부처 및 법률]

관련 시설(업종)	소관부처	관련법률	주요 업무 내용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유원시설업)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기기구·유기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및 안전기준 관리 유원시설업 관리
어린이놀이기구, 어린이놀이시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설치前 제품인증) 어린이제품 안전성 확보 및 관리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놀이기구 시설·안전기준 어린이놀이시설 등록 및 관리
환경유해물질 등	환경부	환경보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료·마감재료·토양·비탁재의 중금속 함유량 관리 등
식음료시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 안전기준 마련 일반음식점 등 위생관리
소방시설	소방청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재예방시설, 소방점검

이번 운영지침에서는 ▲ 키즈카페 사업자를 위해 키즈카페 창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업종신고, 유기기구 및 놀이기구의 등록 절차와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과 안전검사, 안전교육, 배상책임보험가입 및 사고보고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을 안내했다. ▲ 키즈카페 관리감독을 맡은 공무원을 위해 법령에 따른 행정지도·감독 절차와 방법, 법령 위반 시 벌칙 등도 서술했다.

특히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문자(픽토그램) 등을 이용해 놀이기구 안전수칙, 화재 시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자주 질의하는 사항은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운영지침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던 키즈카페(어린이 놀이방) 관련 규정을 한데 모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라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며, “이를 통해 키즈카페(어린이 놀이방)가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곳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분야별 소관 부처 및 담당

2. 알기 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 표지

붙임 1

분야별 소관 부처 및 담당

관련 분야	관련법률	소관부처		담당자	연락처
유기기구(유기시설) , 유원시설업 등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조상훈 사무관	044-203 -2863
어린이놀이기구,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이흥균 연구사	043-870 -545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서상훈 사무관	044-205 -4212
환경유해물질 등	환경보건법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이정석 사무관	044-201 -6756
식·음료, 식품접객업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	박동희 사무관	043-719 -2054
소방시설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	소방청	화재예방과	이민규 소방령	044-205 -7451

발 간 등 록 번 호
11-1741000-000145-01



키즈카페 관련 법령 등 통합 안내서

알기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

2018. 12.

행 정 안 전 부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산 업 통 상 자 원 부
환 경 부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소 방 청

2019년 청년창업농 1,600명 신규 선발

- 청년 현장애로 해소, 정착지원금 부정 사용방지 등 제도개선 -

《 주 요 내 용 》

- 2019년에 청년 1,600명을 신규선발(총 3,200명) 하여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 농지은행의 임대농지, 영농 기술 등을 종합지원
- '18년 처음으로 1600명을 선발, 지원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청년 농업인들의 현장 건의, 국회·언론 지적 등을 반영하여 제도 개선
 - ① (연계지원 강화) 후계농자금(3,150억원) 및 임대용 농지매입 규모(1,000ha) 확대, 로컬푸드·직거래 등 판로 지원 강화 등 추진
 - ② (부정 사용 방지) 사용업종 제한, 통합관리 시스템 등 제도 개선
 - * 지원금 사용을 금지업종 열거에서 사용가능업종 열거방식으로 전환, 지원금 사용내역, 영농이행 및 교육이슈 관련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 ③ (교육 및 영농 부담 완화) 현장 컨설팅 등 교육 인정범위 확대, 출산·육아시 의무이행 유예, 체험농장 등 부업 인정범위 확대 등
- '19년 영농정착지원자 1600명 선발에 신청하려는 청년은 '18.12.31~'19.1.31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신청서 접수, 세부 사항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정책자료), 콜센터(1670-0255) 등 참조
 - * 접수(12.31~1.31) → 서류평가(2.18~3.8) → 면접평가(3.18~29) → 선발자 발표(4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2018.12.27.(목) 「2019년 청년 영농정착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 농식품부는 농업·농촌의 급속한 고령화를 막고, 청년들의 농업분야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18년에 처음 1,600명의 청년창업농을 선발한데 이어 '19년에도 1,600명을 신규로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과 농지, 창업자금, 기술 등을 종합 지원한다.

* 예산(백만원) : ('18) 7,359 → ('19) 21,372(증 14,013)

구분	지원 1년차	지원 2년차	지원 3년차	합계
1년차	100만원(12개월)	90(12)	80(12)	3,240(36)
2년차	90만원(12개월)	80(12)	-	2,040(24)
3년차	80만원(12개월)	-	-	960(12)

- '18년 처음 도입한 영농정착지원사업은 1,600명 선발에 5,164명이 지원하여 3.2: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 선발된 1600명 중 영농 창업예정자(680명) 및 영농 경력 1년차(625명)가 1,305명(81.6%)이었으며, 그중 귀농 청년이 938명(71.9%)에 이르는 등 청년층 유입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농들이 귀농 초기 소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지원금으로 영농에 도움을 받은 사례도 많아, '19년에는 귀농청년들이 더욱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19년 영농정착지원사업은 금년 첫 시행 과정에서 지자체와 청년들이 제기한 다양한 애로들을 반영하여 전면 보완하였다.
 -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부터 시도 청년농 간담회(총 12회), 시·도 담당관회의, 시·군별 청년농 간담회, 지자체 청년농 담당자 워크숍(12.19)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현장간담회에서 청년농업인들은 의무교육부담(연간 160시간), 판로확보 애로, 신용부족으로 인한 창업자금 대출애로, 출산 여성농업인의 영농 애로 등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 또한, 농식품부는 국정감사 및 언론 등에서 제기된 정착지원금의 부적정 사용문제와 관련하여 지침위반으로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원금 환수 등 제재를 추진하고, 향후 부적정 사용 방지를 위해 지원금 사용방식과 사후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기로 하였다.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를 통해 청년농업인들의 정착지원금 사용실태에 대해 현장 점검(10.9~23)을 실시한 결과
 - 대부분의 청년농업인들은 식비, 교통비 등 생계비와 농가 경영비 등 정착지원금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 (업종/사용비율) : 마트·편의점 25.4, 쇼핑 21.8, 음식점 17.1, 농자재 구입 12.1, 주유·가스충전 10.1, 의료비 3.4, 자동차 2.4, 통신비 1.4, 교육비 1.0
- 일부 정착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부정 사용 의심사례에 대해 지원금 환수 등 제재를 추진한다.
 - 목적 외 사용으로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지원금 환수 및 지급정지 등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본인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 정착지원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목적 외로 사용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지급정지,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처분 예정
- 지침 위반은 아니나, 게임기 등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지원금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방식 및 사후관리 등 제도를 전면 개선하였다.(세부내용 2019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추진방안 참조)

< 2019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추진방안 >

- ① 청년농업인에 대해 정착지원금 외에 창업자금 및 농지 지원, 기술 교육 등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 (자금) 영농기반 확보 등을 위한 창업자금 대출(후계농업인 육성자금) 규모를 확대('18: 1,900억원 → '19: 3,150)하고,
 - 창업자금 대출과정에서의 청년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질의응답집을 배포하며, 농협·농신보도 상담 개선을 추진한다.
 - (농지임대) 농지은행은 1,000ha('18년 실적870ha 대비 130ha 증) 규모의 임대용 농지를 신규 매입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우선 임대한다.
 - 이에 더해,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을 전면개편하여, 홈페이지에서 항공사진, 토양정보, 재배작물 등의 정보를 확인하며 본인에게 적합한 농지를 찾고, 직접 임대 신청을 할 수 있게 하였다.
 - (교육) 청년농들의 성장 과정에 따른 맞춤형 교육도 강화하다.
 - (창업전) 선도농가 실습(150명), 법인 인턴(120명) 등 기초기술 교육 → (창업초기) 경영컨설팅 → (성장) 강소농 교육(농진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청년농이 자신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판로) 영농초기 생산 규모가 작고 거래실적이 부족한 청년농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 '우수 직매장 인증' 평가지표에 청년농 참여도를 추가하는 등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에 청년농·중소농의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 ② 정착지원금의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고, 영농초기 소득부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들이 지원취지와 규정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 사용 관리를 강화한다.

○ (선발) 소득이 부족하여 생활안정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농이 선발·지원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 기준을 강화한다.

* 영농정착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청년농과 직계존속의 건강보험료 기준 상향 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중(1월 중 확정)

○ (사용) 정착지원금 사용 금지업종 설정 방식에서 사용 가능업종 열거 방식으로 전환하여 부적정 사용을 원천 차단한다.

- 사용가능 업종은 청년농들의 지원금 사용실태 분석을 토대로 농업, 유통업, 연료판매, 의료기관, 일반/휴게음식 등 20개 업종(중분류 기준)이며,
- 농자재 구매, 지역 마트, 주유소, 음식점 등 청년농업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업종들이 포함되어 있다.

* (현행, 사용금지업종) 총포류판매점, 골프경기장, 카지노, 당구장, 노래방, 기카레저업소, 귀금속, 성인용품점, 안마시술소, 기타대인서비스, 칵테일바, 유흥주점, 단란주점, 외국인전용가맹점, 기타 전문점 등 16개 업종 → (개선, 사용가능업종) 가구, 가전제품, 주방용품, 유통업, 의류, 직물, 신변잡화, 서적/문구, 학원, 사무/통신기기, 자동차정비, 의료관련, 보건/위생, 일반/휴게음식, 음식료품, 건축/자재, 수리서비스, 농업 등 20개 업종

○ (사후관리) 통합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청년농업인별로 지원금 사용 내역 및 영농 이행상황, 교육 및 정책보험가입 등 의무이행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 (제재조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착지원금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및 조치*를 사업지침에 명시하여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청년농업인들의 경각심을 고취한다.

- 정착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해당 지원금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 해당 청년농업인은 청년창업농 자격이 박탈되어 정착지원금 지급과 창업자금·농지 등 관련 정책사업의 우대 지원도 중단된다.

* 부정수급, 목적 외 사용시 지원금 환수 및 지급정지, 제재부가금 부과 등

③ **간담회 등 현장에서 제기된 의무교육 및 정책자금 대출 애로 등 청년농업인들의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의무이행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였다.**

○ **(교육)** 청년농업인들이 상시학습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연간 160시간의 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으나, 농번기에 집합교육 참여 어려움 등에 대한 애로가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였다.

- 필수교육시간을 조정(40시간 → 1년차 40시간, 2·3년차 20시간)하고, **선택교육 시간**(기존 연간 120시간)도 **연차별로 감축***하였다.

* 1년차는 지원금 수령 개월x10시간, 2년차는 지원금 수령 개월x9시간, 3년차는 지원금 수령 개월x8시간으로 단계적 감축

- 농업 관련 자격증 및 학위과정, 정부인증(GAP, HACCP, 친환경 등), 품목별 연구회(시·군 농업기술센터), 농협중앙회 주관 교육*, 경영컨설팅 등도 이수 가능 교육에 포함하여 교육 인정범위를 확대하였다.

* 농협중앙회와 협의하여 인정가능 교육 프로그램 범위 결정 예정

○ **(영농유예)** 여성 청년농업인의 **출산**(최장 3개월, 지원금 지급) 및 **육아유예**(최장 2년, 지원금 미지급)를 인정하여, 임신·출산으로 영농활동을 못하더라도 청년창업농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여성 농업인이 출산·육아 유예를 사용하더라도 개인별 지원금 총 지급기간(최장 36개월)은 동일

○ **(부업활동)** 영농 초기 농업소득이 부족하여 부업활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부업활동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였다.

- 당초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유통하기 위한 경우만 사업체 운영이 가능하였으나, **체험관광 등 서비스***, 드론을 활용한 농약살포 등 생

산설비를 활용한 농작업 대행 서비스 등의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민박, 음식물 판매 등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연간 3,000만원 이하의 농가부업소득 활동

- 4대 보험 중 일부만 가입할 경우, 월 60시간 이하의 단기근로도 가능하도록 하여 농한기 등을 활용한 농업 외 근로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④ 청년농업인들이 편리하게 농림축산식품 정책사업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청년농 콜센터 및 인터넷 정책안내 등을 강화한다.

○ 청년농업인 콜센터(1670-0255) 상담 인력을 확대 운영하고, 청년농업인들의 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응답집(FAQ)을 배포하여 정책안내 및 상담의 품질을 제고하고,

* 사업 신청기간 : ('18) 4명 → ('19) 6명 / 그 외 기간 : ('18) 2명 → ('19) 3명

○ 청년농업인 온라인 카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농림축산식품부) 등을 통하여 청년농업인들에게 농림축산식품산업 관련 정책 및 사업 정보를 수시로 제공한다.

○ 청년농업인 시·군 모니터링단 활동을 장려하여, 시군별로 선배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 간에 자율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한다.

* 청년창업농 지원을 위해 시·군별로 민간 전문가, 선도 농업인, 선배 청년농 등 5명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 멘토링 등 영농 정착 지원

□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9년 청년 영농정착지원사업은 '18년 최초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청년들의 현장 애로들을 고려하여 보다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 영농 정착과 농업 인력구조 개선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 “‘청년농 선발-사후관리’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여 부적절한 지원금 사용의 우려도 불식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참고로, 2019년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18년 12월 31일부터 '19년 1월 31일까지 기간에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접

속하여 청년창업농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거주 시군구 또는 창업희망 시군구 선택)하면 된다.

○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정책자료) 및 농림수산식품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670-0255(청년창업농 안내 콜센터)로 문의해도 된다.

○ 또한, 농식품부에서는 '19년 1월중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내용, 영농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설명할 계획이며,

- 2월중에 서류평가 및 3월중에 면접평가를 거쳐서 4월초에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추진일정: 사업신청·접수(12.31~1.31) → 서류평가(2.18~3.8) → 면접평가(3.18~29) 및 사업 대상자 확정(4월 초) → 지원금 사용(4~12월)

사업장 배출 질소산화물 획기적으로 줄인다

- 미세먼지 및 오존 생성 원인인 질소산화물에 대기 배출부과금 부과 -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에 대해 대기배출부과금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질소산화물’은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로 주로 이산화질소(NO₂) 형태로 나온다. 특히 그 자체로서의 독성뿐만 아니라 햇빛의 광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 및 오존 등을 생성한다.
- 이번 개정안은 국정과제 및 지난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 개정안은 그간 먼지, 황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에만 부과되던 대기배출 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부과하도록 했다.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는 최대 수준으로 산정한 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등 대기배출부과금 제도 운영상의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도입 관련 주요내용 >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초과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했다.

○ 질소산화물 1kg 당 부과단가는 그간 산업계의 의견수렴 결과와 사업장의 오염물질 처리비용 등을 감안하여 2,130원으로 정했다.

○ 부과단가 외 부과금액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이미 시행 중인 먼지, 황산화물과 동일하게 설계했다.

* [기본부과금 부과금액] = [오염물질 배출량] × [부과단가]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¹⁾ × [지역별 부과계수]²⁾ × [농도별 부과계수]³⁾

1) 농도별 부과계수: 배출허용기준 대비 배출농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기 위한 계수

2) 지역별 부과계수: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차등 부과하기 위한 계수

3)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기 위해 매년 고시되는 계수

□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은 초과부과금과 기본부과금이 동일하게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본부과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는 최소부과농도와 부과단가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 2020년까지는 사업장의 반기별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수치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1kg 당 1,490원을 부과한다. 2021년까지는

배출허용기준의 50% 이상일 경우 1kg 당 1,810원을, 2022년부터는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일 경우 1kg 당 2,130원을 부과한다.

- 또한, 2020년 1월 1일 당시 질소산화물 오염 방지시설을 개선 중인 사업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부과금 부과를 유예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2020년 12월 31일 전까지 방지시설 개선을 완료해야 하고, 개선 완료 후 최소부과농도는 배출허용기준의 30%, 부과단가는 1kg당 2,130원이 적용된다.

<기타 배출부과금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내용>

-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배출량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추정방법을 강화했다.
- 현장 측정한 배출량에 20% 가산하던 것을 부과기간 동안 배출허용 기준농도와 배출시설의 설비최대용량으로 추정한 배출량에 20%를 가산한 것이다.
- 또한, 초과부과금 부과항목 중 염소 항목은 실제로 염화수소 형태로 배출되는 점을 감안하여 염화수소 항목에 통합시키고, 불소화합물은 현행 대기오염물질 명칭과 일치시키기 위해 불소화물로 명칭을 변경한다.
- 이 외에도 대기배출부과금 납부방식을 현금, 증권 외에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사업장들이 최소부과농도인 배출 허용기준의 30%까지 질소산화물을 처리할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연간 약 16만 톤 삭감되어 사회적편익이 약 7조 5천억 원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 사회적 편익(7조5천억원) = 질소산화물 삭감량(약 16만톤) × 편익 원단위(46백만원/톤)
- 편익 원단위 출처 : “대기오염물질 사회적 비용 재평가 연구”(‘15, KEI)

○ 이는 미세먼지(PM_{2.5}) 기준 약 1만 3천 톤에 해당하며,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목표인 11만 6천 톤의 11.2% 수준이다.

※ 다만,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26)에 따라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제 확대 시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에 의한 미세먼지 삭감량은 약 5천 톤 수준으로 예상됨

□ 이번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도입 목적은 부과금 부과가 아니라, 미세먼지 및 오존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를 촉구하는 것”이라며, “사업장에서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사전에 질소산화물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하수도 정책 논의의 장 마련

- 하수도 분야 유역관리정책, 재이용 활성화 방향 등 다양한 주제 논의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7개 광역 시·도를 포함한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일자리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2019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공모하였다.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06년부터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 자치단체가 지역 일자리 사업의 관리·운영 주체가 되어 공모에 참여하고, 고용노동부는 공모에서 선정된 자치단체에게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고용노동부는 '19년 총 예산 1,040억 원을 확보하여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2019년 사업부터는 자치단체가 기존의 틀을 벗어나 정책·기획의 단계에서부터 지역이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설계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개편했다.
 - 기존 사업에서 지역의 자율성을 제한해온 ①지방비 편성 제한 ②훈련 최소기준, ③창업훈련기준 등을 대폭 완화하였다.

- ▶ 창업지원대상 **연령층**(청년한정) **폐지** → 신중년 등 다양한 계층 참여가능
- ▶ 참여기관 **인건비**에 대한 **지방비 편성 제한**(지방비의 20%) **삭제**
- ▶ 교육훈련사업 편성기준 완화 → 최소일수(20일) 기준 폐지
- ▶ 창업지원사업 편성기준 완화 → 최소 교육기준(경영분야 10시간, 전문분야 30시간) 폐지

□ 아울러, 2019년 사업부터는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5개 권역* 기초 자치단체를 선별하여 지원하는 사업 유형을 신설하여,

* 5개 권역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 고용 침체를 겪는 지역의 고용위기 해결 및 낙후된 지역 노동시장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공모에는 174개 자치단체가 총 503개 사업을 접수하여 참여 자치단체와 공모 사업 수 모두 전년대비 증가(8개 지역, 34개 사업 증가)하였다.

○ 공모 결과는 권역별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중앙심사를 거쳐 '19년 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박성희 노동시장정책관은 “지역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 “자치단체의 일자리 사업이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생리대, 선호제품으로 지원받으세요

- 현물에서 카드(국민행복카드) 지원으로 변경 -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내년도부터 저소득층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들이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권 (바우처, 연간 최대 126천 원까지 지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정부는 보건위생물품 가격 상승으로 일부 여성청소년들이 부적절한 대체용품을 사용해 사회문제가 되자, 2016년부터 현물을 지원해왔다.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만11세에서 만18세(2001.1.1.부터 2008.12.31.까지 출생자) 여성청소년이다.
 - 지원기간은 한번만 신청하면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재 신청할 필요 없이 만18세가 도달하는 해당년도 말까지 지원된다.
 - 지원금액은 월 10,500원으로, 연 2회(매년 1월과 7월)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당 이용권(바우처)은 그 다음해에 소멸된다.
- 신청방법은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가 신청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주 양육자 등이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와 함께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또한 내년부터는 신청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복지포(<http://www.bokjiro.go.kr>) 사이트 또는 앱을 통한 온라인과 모바일에서도 신청 접수가 가능해진다. (공인인증서 필요)

□ 지원 신청 접수 후에 국가 통합 이용권(바우처) 카드인 국민행복카드(BC, 삼성, 롯데카드 발급)를 별도 발급받아야 하며, 국민행복카드 가맹 유통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 신청·지원문의는 관할 읍·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 청소년 소관부서에 할 수 있고, 이용권(바우처) 이용문의는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각 금융기관 콜센터, 기타 사항은 청소년상담전화(1388)로 문의하면 된다.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나가 위해서는 정책적 사각지대가 없는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붙임】 1. '19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개요

2. '19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 신청 개요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대상에 해당되는 2001.1.1. ~ 2008.12.31. 사이에 출생한 여성청소년 (2019년 기준)
- 지원기간 : 만 18세에 도달하는 해당년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최대 8년)
- 신청기간 : 2019년 1월부터 12월 15일까지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모바일 앱 신청

<방문신청>

- 신청인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등 주 양육자
- 구비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부모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장소 : 청소년의 주소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 신청인 : 청소년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 ※ 단, 신청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방법 : 복지포털(<http://www.bokjiro.go.kr>) 및 앱 이용

☞ 사업명 검색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 지원 내용

- 보건위생물품 구매비용(월 10,500원 산정)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생성
- * 바우처는 6개월분씩 2회(1월, 7월)에 걸쳐 지급하며 1년 단위로 소멸함.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최초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바우처 생성달(1월, 7월) 전달까지 기간 분 지급

- 수혜자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바우처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 구매

<국민행복카드 별 바우처 사용가능 구매처>

카드	온라인 유통점	오프라인 유통점
BC카드	지마켓, 옥션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CU편의점
삼성카드	삼성카드 쇼핑몰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CU편의점
롯데카드	올마이쇼핑몰	롯데마트, VIC마켓

<카드신청 문의>

국민행복카드 신청(국민행복카드 발급사)		문의
BC카드	우체국, NH농협,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수협은행, SC(제일)은행, 광주은행	1899-4651
삼성카드	신세계·세이 백화점 고객센터 및 삼성카드 홈페이지, 삼성카드App, 전용콜센터	1566-3336
롯데카드	롯데카드 전국영업점 및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홈페이지, 롯데카드App, 전용콜센터	1899-4282

금년부터는 보건위생물품 (생리대) “구매비용”을 지원합니다.

선호하는 제품을 직접 선택해서 구입하세요!

신청기간

2019년 1월부터 ~ 2019년 12월 15일
*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니 가급적 서둘러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을 주양육하는 분 (부모님 등)이 신청
방문 청소년의 주소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인 신분증 지참
온라인 복지포 사이트 (<http://www.bokjiro.go.kr>)
 복지포 어플

문의사항

문의처	문의 내용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 대상 해당여부, 신청방법
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바우처 이용 방법, 가맹점 문의
BC카드 1899-4651	
삼성카드 1566-3336	국민행복카드 발급문의
롯데카드 1899-4282	
청소년전화 1388	보건위생물품 지원관련 궁금한 점

지원대상

2001.1.1.~2008.12.31.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
(2019년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저소득 및 저소득외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 및 구입방법

- 1 바우처 포인트 지원 : 월 10,500원, 연 최대 126,000원
* 2019년 바우처 포인트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함
- 2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은 후 가맹점에서 보건위생물품 구매

국민행복카드사별 가맹점

카드사	온라인 유통점	오프라인 유통점
BC카드	자라넷, 옥션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CJ편의점
삼성카드	삼성카드 쇼핑몰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CJ편의점
롯데카드	올마이쇼핑몰	롯데마트, VC 마트

내년 1월부터 단독·다가구 하자보수보증·하자 걱정 없이 안심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준공 전 시공단계 현장검사(3회)···사전 품질관리 강화 -

- 앞으로 단독·다가구주택을 지을 때 결로, 곰팡이, 누수, 균열 등의 하자 걱정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민이 주로 사는 단독·다가구주택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새로운 하자보수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 단독·다가구주택은 전체 주택 중 차지하는 비중(23%, '18년 주택유형별 재고[국토부통계])이 적지 않은 반면,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주거공간으로 인식되어왔다.
- 특히, 주로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지는 빌라 등 다가구주택은 건축주와 거주자가 달라 품질에 신경을 덜 쓰는 측면이 있으며, 대부분 소규모 업체가 시공하므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확실한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어려웠다.
- 이러한 단독·다가구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도입되는 하자보수보증은 신축 예정인 단독·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 하자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보수비용을 지급하는데 그쳤던 기존 사후약방문식의 하자보수보증과 달리 시공단계 품질관리(현장검사

3회) 기능을 더하여 하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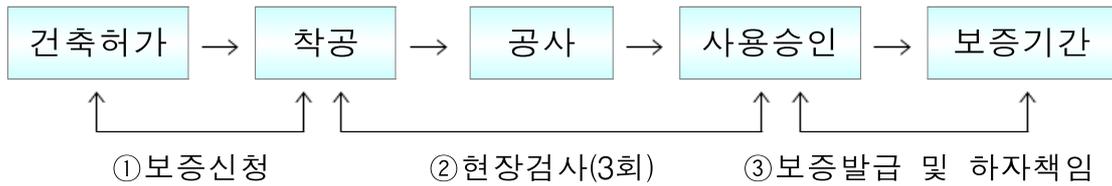
○ 또한, 보증 수수료율(0.771%)을 최대한 낮게 책정함으로써 단독·다가구주택을 주로 시공하는 업체의 부담도 최소화했다.

- 공사비 2억 원이 소요되는 단독주택의 경우 연 23만 원의 보증 수수료만으로 최대 공사비의 5%*인 1,000만 원까지 하자보수비용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어 건축주와 시공자간의 하자 분쟁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현행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의 경우 최대 공사비의 3% 까지만 보증

○ 단독·다가구주택 하자보수보증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박승기 건축정책관은 “단독·다가구주택 품질보증 상품 출시를 통해 서민 주거환경의 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증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의 구분기준에 따른 신축 단독·다가구주택 										
보증신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공자 (주택건설사업자, 건축업·토목건축업 등록자) 										
보증채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다가구주택 건축주 										
보증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 준공 후 발생하는 보증대상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 지급 ※ HUG가 준공 前 현장검사(3회)를 통해 사전 품질관리 수행 * (검사시점) 기초 철근배근 완료시, 지붕층 철근배근 완료시, 사용승인예정일 전 1~5일] 										
보증신청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허가(건축신고) 이후 착공신고 이전 										
보증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건축비의 5% 										
보증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서발급 ~ 약정 보증기간 만료 (최대 5년 이내 공종별 相異) <table border="1"> <thead> <tr> <th>보증기간</th> <th>세부공종 (품질보증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년</td> <td>미장, 타일, 도장, 창호공사, 실내의장, 보일러 설치</td> </tr> <tr> <td>2년</td> <td>토목공사,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석공사, 조적공사 (비내력벽), 철물,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포장공사</td> </tr> <tr> <td>3년</td> <td>지붕, 방수, 철근콘크리트(기둥 및 내력벽 등 건축물 중 주요구조부 제외),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td> </tr> <tr> <td>5년</td> <td>건축물 중 주요구조부(기둥 및 내력벽 등)</td> </tr> </tbody> </table>	보증기간	세부공종 (품질보증 내용)	1년	미장, 타일, 도장, 창호공사, 실내의장, 보일러 설치	2년	토목공사,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석공사, 조적공사 (비내력벽), 철물,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포장공사	3년	지붕, 방수, 철근콘크리트(기둥 및 내력벽 등 건축물 중 주요구조부 제외),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5년	건축물 중 주요구조부(기둥 및 내력벽 등)
보증기간	세부공종 (품질보증 내용)										
1년	미장, 타일, 도장, 창호공사, 실내의장, 보일러 설치										
2년	토목공사,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석공사, 조적공사 (비내력벽), 철물,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포장공사										
3년	지붕, 방수, 철근콘크리트(기둥 및 내력벽 등 건축물 중 주요구조부 제외),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5년	건축물 중 주요구조부(기둥 및 내력벽 등)										
보증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금액 × 보증기간(年) × 보증료율 * 보증료율 : 연 0.771% 										

해양사고 예방 첫걸음, 준해양사고 뉴스레터 첫 발간

- 준해양사고 사례 공유를 통해 대형 해양사고 예방 기대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박준권)은 해양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준해양사고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24일(월)부터 주요 선사, 유관 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준해양사고는 선박의 구조 설비나 운용 등과 관련하여 시정되지 않으면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태를 의미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11년 ‘준해양사고 통보제도’를 도입하여 준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 소유자나 운항자가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준해양사고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주요 선사와 함께 ‘준해양사고 뉴스레터’를 제작하였다.

뉴스레터 창간호에는 ▲준해양사고 통보제도 관련 정보 ▲2012~2017년 통보된 준해양사고의 원인분석 결과 ▲주요 준해양사고 사례분석 및 예방법 등을 담았으며, 뉴스레터 내용을 바탕으로 풀 수 있는 해양안전퍼즐을 함께 수록하여 구독자의 관심을 높이고자 하였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이번 달 뉴스레터 창간호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는 격월로 준해양사고 뉴스레터를 발행 및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준해양사고 통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해양사고 통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조항 신설, 통보 주체 확대, 통보 우수자 지원근거 마련 등을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김병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은 “하인리히 법칙*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 라며, “이번 뉴스레터 발간을 통해 선사의 준해양사고 통보가 활발해지고, 준해양사고의 사전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져 대형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 사고통계 분석을 통해 큰 재해, 작은 재해, 사소한 사고가 1:29:300의 비율로 나타난다는 통계적 법칙



제1호
준해양사고
통보 YES!!
처벌 NO!!
신분보장 YES!!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첫걸음

준해양사고 뉴스레터

● 준해양사고 ●
선박의 구조 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 사정 또는 개선되지 않으면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태
-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1호』 -

해양안전분야 정착을 위한 첫걸음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뉴스레터를 시작하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박준권〉

이 뉴스레터는 준해양사고 통보제도가 무엇이며, 어떤 목적을 위하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보다 재미있고 친숙한 방법으로 알려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준해양사고 통보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비난 및 처벌에 대한 우려 등의 이유로 통보율이 저조했습니다. 준해양사고 통보제도는 선사 및 선박관련자들의 참여를 전제로 하며 이 뉴스레터 역시 함께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뉴스레터 1호는 준해양사고 통보제도와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하고, 선사로부터 통보된 준해양사고 사례 분석과 선장인터뷰 등을 담았습니다. 더불어 뉴스레터 내용을 바탕으로 해양안전 퍼즐을 수록, 당첨자들을 위한 상품을 마련하여 구독자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자 하였습니다.

준해양사고 뉴스레터는 해양안전심판원, 선사 및 선박관련자들의 참여를 전제로 하며 이 뉴스레터 역시 함께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뉴스레터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준해양사고 통보제도란?

선박 소유자 또는 선박운행자는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준해양사고를 중앙수석조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1항〕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양조사코드(CI Code)를 발효(2010년)하면서 체약국에게 준해양사고 관리를 권고, 이에 따라 2011년 준해양사고통보제도를 국내법에 명시

★통보자 신분 비공개

중앙수석조사관은 준해양사고를 통보한 자의 의사에 반하여 통보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통보방법 : 홈페이지 www.kmat.go.kr
이메일 kmat_special@korea.kr



준해양사고의 원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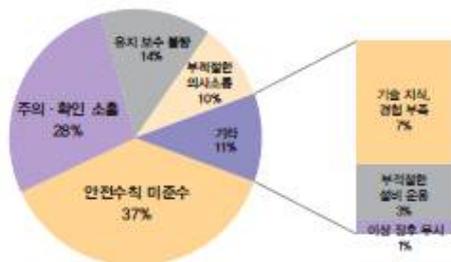
해양사고는 해양 및 내수면에서 선박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대표적으로 인명 사상, 충돌, 좌초, 진북, 침몰, 화재폭발 등이 있습니다. '13~'17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선박등록척수는 감소하는데 반해 해양사고 건수와 인명피해 모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하나의 대형사고 이전에 29건의 경미한 사건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300건의 사고 징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준해양사고를 사전에 잘 관리한다면 대형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12~'17년 동안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접수된 준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준해양사고 주요원인 분석



안전수칙 미준수가 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의·확인소홀, 유지보수 불량, 부적절한 의사소통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수칙 준수, 주의·확인 철저히 하기 등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는 것이 해양사고 예방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1 항해 중 해치커버(Hatch Cover) 조작 시 주의하세요!

해치커버 조작 시 고정장치 확인 소홀히 해 휠(Wheel)이 레일에서 이탈하여 인명피해·선박손상 초래할 뻔



화물창 소제작업을 위해 4번 화물창 해치커버를 일부만 개방한 뒤 힘을 나무뿔기로 고정할 소제작업 종료 후 나무뿔기를 제거하지 않고 해치커버를 조작하던 중 힘이 뺏기위로 넘어가면서 레일을 이탈함. 이후 해치커버를 제 위치에 올려놓았으나, 만약 해치커버가 레일에서 이탈하여 갑판으로 추락할 경우, 인명피해 및 선체손상이 발생할 수 있었던 준해양사고임.



어쩌다 이런일이? (잠재요인)

- 해치커버 고정 장치 제거 미이행 및 확인 소홀
- 해치커버를 일부만 여는 등 안전 수칙 미준수



이것만은 꼭! (예방교훈)

- 안전 수칙 준수 (해치커버는 완전히 밀려진 상태에서 고정)
- 해치커버 일부 OPEN 지양 및 기상이 좋지 않을 경우 해치커버 조작 금지
- 해치커버 조작 위치에 "조작 전 고정 장치 확인" 문구 게시